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2 | 2024.11.25. (2024.11.18~11.2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18~11.24)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반도체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와 공동 개최하고,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15종, 2031년까지 총 39종을 개발하고, 한·미 양국 및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질병을 관리하거나, 실제 통신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 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 ·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3인)」**,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인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에서 마련된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 · 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7인)」**,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품목에 대해서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위험성 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현행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건강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안건 심의를 위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11.28.14:00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결위>는 11.25 예산안등 조정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11.29 소위 합의 시 예산안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산자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로드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 9
- 「'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선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
-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보건복지부) ·····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3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3
-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5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6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7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 2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 2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 2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 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3인) ····· 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 23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 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 ····· 24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6인) ····· 25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의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25
-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 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7인) ·····26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27
- 직업교육법안(정성국의원 등 10인) ·····27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29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29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30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31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31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32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32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3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3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3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34
-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3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3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3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3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7인) ···3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3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3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3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3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3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18~11.24)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의 개선 등을 위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ESG]**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16)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중대재해]** ‘인천항만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및 시사점
- **[국방획득/방위산업]**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세]** 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 · 관세 정책의 변화
- **[국제상사중재]** 전문가 결정 절차(Expert Determination): 중재 절차와의 차이점 및 주의점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1 (2024년 11월 3째주)
- **[중국]** 중국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제도 및 직원대표 제도 개정
- **[소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로드맵」 발표** - 반도체 분야 3대 국제표준화기구(IEC·JEDEC·SEMI) 공동포럼 개최, 표준협력과 확산 도모 - 국표원,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로드맵」 발표, '31년까지 국제표준 39종 개발 제안	2024-11-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외 반도체 표준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와 공동 개최하고,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SEMI의 반도체 제조 공정의 효율과 품질 극대화를 위한 로봇 운영, 통신, 데이터추적과 같은 자율공장(Autonomous Fab) 표준화 작업반(WG) 동향, JEDEC의 저전력 D램(LPDDR6) 표준 규격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양대 기구에서의 활동 내용을 소개했음. 반도체 공장 자동화 기업인 피어그룹(PEER Group)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SEMI의 작업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공장 보안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표준 개발 등 주요 현황에 대해 발표했음

또한, 국표원은 포럼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의 한 분야인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과 IEC에 제안한 인공지능용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 특성평가" 표준의 개발 성과를 발표했음. 반도체 표준화 전략은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15종, 2031년까지 총 39종을 개발하고, 한·미 양국 및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음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추진과제

(1) 미래선도 반도체 기술 표준화

❶ 첨단 패키징 기술 표준화
❷ 국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표준화
❸ 에너지·모빌리티용 초고전압(10kV) 화합물 전력반도체 표준화

(2) 新기술-新산업 반도체 표준화

❹ AI 반도체용 新기술 뉴로모픽 반도체 표준화
❺ 바이오-반도체 新사업 융합기술 표준화

(3) 반도체 표준화 기반 조성

❻ R&D-표준-특허 연계 생태계 구축 및 표준개발 확대
❼ 반도체 표준의 활용·확산 지원
❽ 반도체 표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지원
❾ 국내·외 반도체 표준화 협력기반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선정 - 의료 분야(3), 통신 분야(1), 자율 분야(1) 등 초 5개 과제 선정 -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출시 - 선도서비스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	2024-11-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질병을 관리하거나, 실제 통신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내년 추진될 예정임

*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임

이번 사업은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임

이번에 선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의료 분야 3개 과제와 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 각각 1개 과제이며,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최대 5억 원의 지원비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됨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과제]

분야	서비스명	수행기관	주요 내용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중증이환 예측 서비스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 • (주관) 가톨릭중앙의료원 • (참여) 서울성모병원	만성질환 위험도를 분석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	룰루메딕	해외 체류 국민이 현지 의료기관 방문시 국내 의료 이력을 직접 제시하거나 구두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건강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한 똑똑한 약물 비서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	개인의 약물관리, 안전 복약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 및 중복처방 방지 등 진료 연속성 개선을 도모하는 의료진 지원 서비스
통신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 •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참여) SK텔레콤, KT, LG U+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 기반의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자율	마이데이터로 떠나는 여행지원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 • (주관) NICE평가정보 • (참여) 트립비토즈	여행 기록 통합 조회 및 여행지 추천, 여행 경비 설계, 여행 크루 추천 서비스

보건복지부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 신설,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즉시진입 가능 기술의 안전성 검증 · 관리 강화, 문제기술 퇴출 - 비급여 현황관리 및 필요시 직권평가 · 등재로 환자부담 경감	2024-11-21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음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 · 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 · 비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기존기술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①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②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③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힘

본 제도개선의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함.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 · 경제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함

둘째,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함.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 · 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함

셋째,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하여 환자부담을 완화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향(안)>

문제점		개선방향
새로운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지연**	➡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확대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검증 미흡**	➡	**안전성 검증 · 관리 강화, 문제기술 퇴출**
비급여 확대에 따른 **환자부담** 증가 우려	➡	**비급여 현황관리** 및 **필요시 직권평가 · 등재로 환자부담 경감**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9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교육 · 시험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또는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를 통합하여 강사의 배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9 시행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이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업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1-22 시행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국외에 체류하거나 질병 ·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의 방법에 온라인 교육 방법을 추가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자구 수정 (제4조제2항제1호, 제6조 제2항, 제16조제2호, 제28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연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추가하고 단서조항 신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로, "별표 제11의3"을 "별표 19"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개정 (제28조제1항)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21. ~2024.12.11.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 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 ·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함

②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는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③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

-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연장기간 포함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④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

-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

⑤ 상계관세의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규정

-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1, 팩스: 044-215-8079)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1.21. ~2024.12.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23년 9월 7일에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15의7」 및 「별표 22」를 정비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세 및 원산지와 관련한 협정의 주요 내용을 규정

- 필리핀의 영역을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과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함
-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방식으로 규정하고, 필리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으로 규정함
-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발급 방식 및 자율발급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상업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문구와 작성 방법을 규정함
- 원산지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서면조사 하거나, 필리핀의 관세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직접 현지조사 할 수 있게함
-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관세 당국이 원산지 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직업용구, 전시물품, 운동용품, 상용견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면제되는 세액의 110%까지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출입 거래에서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③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15의 7」 및 「별표22」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1, 팩스: 044-215-807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20. ~12.30.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에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하고 근로자와 공무원(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10일의 휴가 부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안 제43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044-202-7476 팩스: 044-202-8054)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20. ~12.31.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환수 주체 및 대상 명확화 (안 제16조 제2항 개정)

- 부정수급액 환수 주체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반환 대상에 학습기업의 사업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외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인적자원개발협의체도 포함하도록 정비함

② 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 (안 제16조 제3항 개정)

-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③ 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 (안 제16조 제4항 개정)

-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전화: 044-201-6879, 팩스: 044-201-6873)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20. ~12.30.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주요 내용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신설 (안 제11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044-202-7273 팩스: 044-202-8078)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1.19. ~12.30.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08.08. 공포, 2025.02.09.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기준으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을 정함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상호명,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절차 마련 (안 제8조 신설)

③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 지정 등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

- 의료기기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2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각각 받도록 함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전년도 교육실적과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함

④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 내용 구체화 (안 제13조 신설)

-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에는 위탁 의료기기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위탁 내용, 위탁계약 기간,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명확화 등 (안 별표)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 사업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등으로 정함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나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 가능한 식음료 기준을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1일 10만원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20. ~12.30.

'24.1.3일 발표한「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시행령 제80조제1항)

-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보수의 이중수취 금지 등을 규정

②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 (시행령안 제260조제2항,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전화: 02-2100-2664, 팩스: 02-2100-267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21. ~12.31.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 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 ·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공매도 표시 허용 (제208조제2항)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임을 거래소에 직접 알리지 않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허용

②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기간·예외사유 구체화 (제208조의4)

-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산출하기 위한 시점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현행 유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③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제208조의6, 별표22)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연장 포함 총 1년으로 제한하되 상환기일에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또는 계좌간 대체 제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인의 경우 1억원, 개인의 경우 5천만원으로 정함

④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제208조의7, 별표5, 별표22)

- 공매도를 하는 법인이 하여야 하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내용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순보유잔고 보고대상 법인 또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경우)으로 구체화하고,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주기 등 세부사항 규정하며, 위반시 금융투자업자 기관·임직원 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전화: 02-2100-2652, 팩스: 02-2100-264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2024-11-18 발의

다른 법령이나 실무상,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민법」은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명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경우 허가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한편,「전자서명법」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바, 이는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원거리에 있는 사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온라인총회 시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이에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 **(안 제40조, 제43조, 제73조 및 제76조)**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2024-11-19 발의

현행「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364조 등)**

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2024-11-20 발의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16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2024-11-18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3인)	2024-11-18 발의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4-11-19 발의

투자계약증권 등은 그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어서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거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러나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도 다수의 투자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에 대해 유통 관련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2023년 12월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비정형증권 유통 시장 개설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에,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 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②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 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 (안 제166조제1항 신설)**

③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안 제166조제3항 신설)**

④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 (안 제166조제4항 신설)**

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4-11-19 발의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도 이 기술을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에 도입하여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발행인이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증권 거래 방식의 혁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2023년 2월에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했음

이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인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에서 마련된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2024-11-19 발의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	2024-11-21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와 달리 출판콘텐츠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주요 K-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기준 역대 최저치(43.0%)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 **(안 제25조의8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6인)**	2024-11-18 발의

2022년 11월 30일 챗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들이 초거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이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산업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3대 인공지능 지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Global AI Index)'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며,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 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이인선의원 등 11인)**	2024-11-18 발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11-20 발의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도록 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사회를 조성함과 동시에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진흥과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기반 조성과 함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율 체계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인공지능사회의 신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7인)**	2024-11-21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

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사업자에게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5, 제44조의7, 제44조의11·제44조의12·제44조의13·제44조의14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2024-11-2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및 제31조의2)**

교육위원회	직업교육법안(정성국의원 등 10인)	2024-11-21 발의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기술 등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환경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또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및 직무도 급변하여 2020년부터 5년 동안 8,500만 개의 일자리는 자동화 등으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직업교육은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에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됨.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의 패러다임이 요구됨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직업능력 계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산업계의 수요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까지)

③ 직업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산학연협력,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④ 직업교육 단계를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⑤ 초·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기초직업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등과 관련한 사항과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⑥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은 최대 1년 이내의 학점·학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⑦ 평생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직업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2024-11-21 발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4항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2024-11-20 발의

최근 모든 경제·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혁신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19 이후 농식품 분야는 온라인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플랫폼 기반 신(新) 유통기업의 급성장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직면하였음. 그런데 농수산식품 기업 간 거래(B2B)는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도매시장은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이전의 관행적 거래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채 답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 대응에서 경쟁 유통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임

이에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가소득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②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③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部類)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④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이 아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는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 (안 제12조)

⑥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8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운영자에 대해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가 인가요건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취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및 제27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2024-11-18 발의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용전기설비의 수검자가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현장 전기설비 시공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필요한 인력·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2024-11-19 발의

온라인에서의 상품, 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개인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 해외 직구 비율도 급증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가상의 공간이나 서버 등 거래 중개 수단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 침해 신고, 침해 방지 조치 등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국외 행위 적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2024-11-19 발의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2024-11-19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등 13인)	2024-11-20 발의

주얼리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 브랜드·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결과, 유럽·중국 등에서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주얼리산업은 이러한 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게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어주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잃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업계추산 약 30조원 이상인 국내 주얼리시장이 과거 규제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소 50% 이상의 무등록, 무자료 불법 거래되고 있고, 음성적 거래로 인한 모조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많은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주얼리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었음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을 선진 유럽처럼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 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국내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얼리산업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주얼리산업 모법이 제정되지 않아 귀금속상에 대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고 국제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024-11-22 발의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음

또한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야기하고 금연을 어렵게 하며 설탕이나 바닐린과 같은 가향물질은 연소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담배의 제조자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 제한만 하고 있으며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3, 제31조의2 및 제34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4-11-19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4-11-19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의무가 없어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11-19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68세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이며, 이는 같은 조사대상 근로자가 58세일 때의 월평균 근로소득 311만원보다 42% 적은 것으로,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의 주요 요인이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환경노동위원회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11-20 발의

2009. 5.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음.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담고 있음. 2023. 6. 26. 동 협약은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 선복량 40퍼센트,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가 충족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25. 6. 26.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정함 (안 제3조)

③ 선박의 경우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의 최소화 조치와 출입 및 작업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④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선박을 재활용하도록 함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⑤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하여 행정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20조)**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4-11-20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사·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사·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4-11-20 발의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으로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차별적 처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함 **(안 제20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4-11-21 발의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8조, 제18조의3, 제37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7인)	2024-11-21 발의

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8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4-11-2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를 지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24.3%)이 노인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지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임. 또한,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있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19조·제19조의2·제22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11-22 발의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심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보다는 특정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에도,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연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2조의3제1항 신설)**

다만,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재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의 적합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함 **(안 제112조의3제2항 및 제175조제5항제10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2024-11-18 발의

최근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 제조사나 차종별로 그 기능이나 성능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4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2024-11-19 발의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 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4-11-22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질문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결과보고서가 소수 종사자와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사고발생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감독을 방지하고, 택배업체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1/28(목)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11/26(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11/27(수) 10:00	- 고유법 의결, 타위법 심사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11/25(월) 10: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2소위	11/28(목) 10:00	- 법안 심사
기재위	전체회의	11/26(화) 10:00	- 법안 의결 등
	경제재정소위	11/27(수) 10:00	- 법안 심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11/26(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7(수) 14:00	- 법안 의결, 공청회(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감사요구안 번안의 건
과방위	현장검증	11/25(월) 10:00	- 한국방송공사 현장검증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11/25(월) 10: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1소위	11/27(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8(목) 10:00	- 법안 의결, 법안(지방세관계법) 상정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11/25(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5(월) 14:00	- 법안 의결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소위	11/26(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8(목) 10:00	- 법안 의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1/26(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11/27(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8(목) 10:00	- 법안 의결, 공청회(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11/25(월) 10: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29(금)	- 소위 합의 시 예산안 등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25(월) 10:00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조경태·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5(월) 13:30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박성훈·안도걸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5(월) 14:00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황운하·정준호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26(화) 10:00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송석준·손명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6(화) 10:00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김주영·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7(수) 09:30	**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 국회토론회**	정태호·박수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7(수) 10:00	**제1차 에너지 정책 릴레이 포럼**	이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1/27(수) 14:30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박홍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1/28(목) 10:00	**[K-스페이스 토론회 시리즈 2] 디지털 스페이스 미래우주경제와 ICT의 역할**	황정아·박민규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1/28(목) 10:00	**이스포츠 산업 글로벌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강훈식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29(금) 10:00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선택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	박찬대·박희승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29(금) 14:00	**AI 시대, 우리의 전력산업과 시장은 준비가 되었는가?**	김한규·김성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1/26(화)	**「현안, 외국에선?」 제95호(2024-23호) 발간**	국회도서관	
	11/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0호(2024-22호) 발간**		
	11/27(수)	**「금주의 서평」 제705호(2024-46호) 발간**		
	11/27(수)	**「World&Law」 제2024-21호 발간**		
	11/27(수)	**「THE 현안」 제35호(2024-35호) 발간**		
	11/26(월)	**「NABO Focus」 제77호(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대미투자산업에 미칠 영향)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18(월)	「THE 현안」 제34호(2024-34호)	국회도서관	
	11/20(수)	「금주의 서평」 제704호(2024-45호)		
	11/18(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4호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18~11.24)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19(화)	지적재산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의 개선 등을 위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1/19(화)	ESG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16) 주요 내용과 시사점
11/19(화)	중대재해	'인천항만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및 시사점
11/20(수)	국방획득/ 방위산업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21(목)	조세	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 · 관세 정책의 변화
11/22(금)	국제상사중재	전문가 결정 절차(Expert Determination): 중재 절차와의 차이점 및 주의점
11/22(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1 (2024년 11월 3째주)
11/22(금)	중국	중국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제도 및 직원대표 제도 개정
11/22(금)	소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